

1. 住宅建設促進法 施行規則 中 改正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 1994-180號 1994. 7. 13

1. 개정이유

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('94. 1. 7. 법률 제4,723호)됨에 따라 동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기타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현재는,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이 일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여 관련 규정의 이해를 쉽게 하고,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축의 종류와 가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결정통지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사업계획 승

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사전결정결과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의 타당성등을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.

- 다.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평균규모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1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로 제한함.
- 라.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사업주체의 파산·합병·등록말소·영업정지 등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던것을,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및 전산확인등에 의한 결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.
- 마.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업무실적과 감리원 보유현황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

도록 하고, 당해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는 당해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함.

- 바.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감리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,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매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함.
- 사. 기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전 결정신청등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서식을 신설·보완하고, 감리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주택건설공사감독업무 등에 관한 규칙('79. 9. 1. 부령 제239호)을 폐지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 세워서 작성)를 건설부장관(참조: 주택국장, 전화번호 503-736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

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?